

의안번호	2217631
의 퇴 인	송석준 의원
회 답 일	2026.4.20.
추계번호	26E156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를 2026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환급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5,72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

(단위: 억원)

		2026
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신설 (안 제111조의6)	교통·에너지·환경세	-5,293
	개별소비세	-428
	계	-5,72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1조의6(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)	○ (적용대상 자동차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(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) ○ (적용 요건)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닐 것 ②차량 소유자가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수혜대상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○ (특례 내용) 2026.4.1.~2026.12.31.동안 자동차연료 구입 시 유종별 다음의 세액 환급 - (휘발유·경유)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250원/L - (LPG부탄) 개별소비세 전액(2026.4. 기준 247.5원/kg) ○ (환급 한도액) 연간 100만원 ○ (기타) 동일인이 2대 이상의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 시 그 중 1대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 ○ (시행일) 2026.4.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11조의6(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의 시행시기 및 적용기한을 고려하여 2026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
 - 개정안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시행일 이후 연말까지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환급을 적용하도록 규정
 - － 개정안에 따른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는 202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75일간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
- 세수효과는 ‘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 대수 × 1대당 환급액’의 방식으로 추계
 - 1대당 환급액은 ‘1대당 평균 연료 사용량 × 연료 단위당 환급액’으로 추정하되,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으로 산출
-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(경형 화물자동차 포함) 대수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6년 2월 말 기준 누적 등록대수 자료를 활용
 - 개정안은 복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1대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, 자료의 한계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못함
 - － 그 외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¹⁾의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차량 역시 별도 구분이 어려워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전체를 특례 적용대상으로 설정

1)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10호의2

-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의 평균 연료사용량 자료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평균주행거리(한국교통안전공단) 및 평균연비(한국에너지공단)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연료사용량을 추정
 - 2024년 기준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평균주행거리를 평균연비로 나누어 평균 연료사용량을 추정하고, 추정치가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제
 -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에 한정한 연료사용량, 평균주행거리 및 평균연비 등 자료의 습득에 한계가 있어 평균주행거리는 비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, 평균연비는 전체 화물자동차를 각각 대상으로 집계된 자료를 활용
- 추계기간 동안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은 247.5원/kg(144.54원/L²⁾)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
 - 2026년 4월까지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은 247.5원/kg이 적용될 예정이며, 5월 이후의 탄력세율 적용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5월 이후에도 현행 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
 - 개정안은 LPG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
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·자동차세·부가가치세 등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 - 개정안은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액을 '환급'하는 특례로, 교육세 등 부가세의 과세표준(본세액)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추계방법

- 2026년 2월 말 기준 화물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
 - 화물자동차의 총 등록대수는 약 370만대이고, 이 중 개정안에 따른 환급 특례 적용 대상은 비사업용 경형·소형 화물자동차로서 휘발유·경유·LPG부

2) LPG부탄 1L 당 0.584kg의 환산비 적용

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255만대 수준임

－ 유종별로 살펴보면 휘발유 4만대, 경유 226만대, LPG부탄 25만대로 구성됨

[표 2] 화물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현황: 2026년 2월 말 기준

(단위: 대)

		경형·소형			중형·대형	합계
		경형	소형	소계		
사업용	휘발유	0	8	8	8	16
	경유	0	117,721	117,721	211,964	339,685
	LPG부탄	6,020	30,494	36,514	3,951	40,465
	기타 ²⁾	25	32,662	32,687	59,632	92,319
	계	6,045	180,885	186,930	285,555	472,485
비사업용 ¹⁾	휘발유	1,963	38,235	40,198	677	40,875
	경유	7	2,262,779	2,262,786	448,243	2,711,029
	LPG부탄	44,692	201,360	246,052	10,209	256,261
	기타 ²⁾	2,147	201,334	203,481	14,699	218,180
	계	48,809	2,703,708	2,752,517	473,828	3,226,345
합계	휘발유	1,963	38,243	40,206	685	40,891
	경유	7	2,380,500	2,380,507	670,207	3,050,714
	LPG부탄	50,712	231,854	282,566	14,160	296,726
	기타 ²⁾	2,172	233,996	236,168	74,331	310,499
	계	54,854	2,884,593	2,939,447	759,383	3,698,830

주: 1) 관용 및 자가용

2) 전기, 수소전기 등

자료: 국토교통부

□ 2024년 기준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화물자동차 평균연비로 나누어 일평균 연료사용량을 추정하고, 이를 특례 적용기간 동안의 연간수치로 환산하면 휘발유 824 L/대, 경유 921 L/대, LPG부탄 1,203 L/대로 산정됨

○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에 한정한 평균주행거리 및 평균연비 자료의 습득에 한계가 있어 평균주행거리(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)는 비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, 평균연비(한국에너지공단 제출자료)는 전체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집계된 자료를 활용

－ 2024년 기준 추정치가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제

○ 연간 연료사용량은 일평균 연료사용량에 275일(특례 적용기간, 2026.4.1.~2026.12.31.)을 곱하여 산출

[표 3] 화물자동차 1대당 일평균 연료사용량 추정

(단위: km/대, km/L, L/대)

	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일평균 주행거리 (A)	평균연비 (B)	일평균 연료 사용량(추정치) (C=A÷B)	연간 연료 사용량(추정치) (C×275 ¹⁾)
휘발유	32.2	10.75	3.0	824
경유	36.0	10.75	3.3	921
LPG부탄	28.6	6.54	4.4	1,203

주: 1) 2026.4.1.~2026.12.31.의 일 수

1. 주행거리와 평균연비는 2024년 기준 자료임

자료: 한국교통안전공단, 「자동차주행거리통계」, 2025;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추계결과

□ 앞서 산출한 연간 연료사용량(추정치)에 환급단가를 곱해 대당 환급액을 산출하고,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 대수를 적용하여 연간 세수효과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

- 개정안에 따라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를 환급할 경우 2026년 5,721억원(휘발유 83억원, 경유 5,210억원, LPG부탄 428억원)의 세수감소가 예상됨

[표 4]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세수효과 추계: 2026년

	1대당 연간 연료 사용량 (A, L/대)	환급단가 (B, 원/L)	1대당 연간 환급액 (C=A×B 만원/대)	비사업용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대수 (D, 대)	연간 세수효과 [-min(C, 100)×D, 억원]
휘발유	824	250	20.6	40,198	-83
경유	921	250	23.0	2,262,786	-5,210
LPG부탄	1,203	144.54 ¹⁾	17.4	246,052	-428
계	-	-	-	-	-5,721

주: 1) kg당 세율(247.5원)을 L 당 세율로 환산한 값임(L:kg=1:0.584)

□ 위 추계결과를 세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

- 개정안에 따라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를 환급할 경우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5,293억원, 개별소비세 428억원의 감소가 예상됨

[표 5]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세수효과: 세목별

(단위: 억원)

		2026
비사업용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신설 (안 제111조의6)	교통·에너지·환경세	-5,293
	개별소비세	-428
	계	-5,721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